

## ILO의 최근 논의 동향과 과제

이 성 기

(노동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설립, 2002년말 현재 17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sup>1)</sup> UN 전문기구로, 그 구성은 크게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이사회(Governing Body) 및 사무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매년 6월중 17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며, 협약 및 권고 등 국제노동기준채택, 중요한 노동·사회문제 토의, 예산과 사업계획 확정, 이사회 멤버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총회의 회원국 대표는 4인이며, 그중 2인은 정부대표로, 나머지 2인은 각 회원국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총회 의제 선정, 예산과 사업계획 사전 심의, 사무총장 선출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매년 3회(3월, 6월 및 11월) 개최된다.<sup>2)3)</sup>

- 1)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2) 이사회는 정이사 56명(정부측 28명, 노·사 각 14명), 부이사 66명(정부측 28명, 노·사 각 19명)으로 구성되고,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사업재정위원회, 법률 문제 및 국제 노동기준위원회, 고용 및 사회정책 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회의 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이와 별도로 작업반(working party) 또는 전원 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를 운영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업무 감독을 받으며, 사무총장 통솔하에 총회 및 이사회를 비롯한 제반회의의 준비와 보조, 회의 결정 사항의 실행, 노사관계 및 고용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출판물의 편집 및 발간 등을 수행하는 행정기구이다.<sup>4)</sup>

ILO 사무총장은 5년 임기로 ILO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1998년 3월 이사회에서는 칠레출신 Juan Somavia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sup>5)</sup> Somavia 사무총장은 사실상 ILO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그는 취임 이후 『양질의 고용(Decent work)』을 ILO 활동의 목표로 설정,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ILO의 핵심 사업인 『양질의 고용』과 ILO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세계화 관련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 양질의 고용(Decent work)

Somavia ILO 사무총장은 취임 직후인 '99년 제87차 ILO 총회에서 『양질의 고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고용(Decent work)』이란 ‘남녀 공히 자유·형평·안정·인간존엄이라는 조건을 갖춘 일할만하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양질의 고용』 기회 확대를 ILO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sup>6)</sup>

또한, Somavia 사무총장은 『양질의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작업장에서 기본권 증진, ②고용, ③사회보장 및 ④사회적 대화가 그것이다. 『양질의 고용』이란 이러한 4대 전략 목표가 접합된 초점(converging focus)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ILO 사무국의 조직은 물론 ILO 사업 및 예산도 4대 전략 목표에 따라 재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ILO에서는 각 회원국이 『양질의 고용』 관련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입안·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평가 지수, 즉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질의 고용』 지표(DWI : Decent Work Indicators)를 개발중에 있다.<sup>7)</sup>

3) 한국 정부는 2002년도 ILO 총회에서 정이사국으로 재선출되어, '96년부터 3회 연속 정이사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주제네바 대표부의 정의용 대사는 이사회 부의장(정부측)으로 재임중(2002. 6-2003. 6)이다. 한편, 한국 경총의 조남홍 부회장도 '96년부터 3회 연속 경영자측 부이사국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중이다.

4) ILO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총 2,273명으로 본부에 1,067명, 지역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1,206명이다. 이 중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P등급 이상)은 971명(한국인 5명)이다.

5) 금년 3월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무총장 선출이 있을 예정이나, 재출마 의사를 밝힌 Somavia가 재선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6) ILO, Decent work, 1999

7) DWI 초안은 아직 ILO 사무국내 검토 단계로 『양질의 고용』의 6대 원리(일할 기회, 직업 선택의 자유, 생산적인 일자리,

## 작업장에서의 기본권 증진 (the promotion of rights at work)

### 국제노동 기준의 설정 및 감독

ILO 창설 당시 ILO의 주된 업무는 국제 노동기준 설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협약 제정 등 기준설정 기능은 지금 이 시점에서 ILO의 핵심 기능으로 남아 있으며, 협약 및 권고 등 국제 노동기준은 ILO 총회에서 채택된다.<sup>8)</sup> ILO는 회원국에게 협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회원국들이 비준한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

ILO내 두 개의 기구가 이런 감독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제출한 비준 협약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통상 30여개의 위반사례를 선정하여 청문회 형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

고용상의 형평, 직업의 안정성 및 기본권의 존중)를 반영하는 11개 분야, 2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이사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다.

8) 총회에서 협약 및 권고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02. 12월말 현재 ILO 협약은 184개이나, 비준 대상 협약은 98개이다(한국 18개 비준).

작년 총회에서는 제2차 대전중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일본 정부의 『강제 노동협약』(제29호 협약) 위반 사례를 논의 의제로 선정하자는 노동자측의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장이 대립되었으나, 2003년도에 재논의하자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다. 따라서 금년 총회 기준 적용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가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ILO 이사회 산하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설치, 각 회원국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단체가 제출한 진정에 기초하여 회원국에서의 위반사례를 검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ILO 이사회가 해당국 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하게 된다.

ILO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11차례에 걸쳐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92년 3월 『전노협』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하여 3차례의 권고를 하였고, '95. 12월 민주노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8차례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2002.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권 인정 촉구, 기업단위 복수노조, 필수 공익 사업 범위조정 문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들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간의 진전 사항 등을 ILO에 통보하여야 하고, ILO는 정부 답변서를 토대로 금년 6월 또는 11월 이

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기본권 선언 후속 조치

1994년 ILO 총회시 ILO 사무총장은 “무역 자유화로 인한 경제 발전의 성과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핵심 노동기준의 비준준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1995년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1996년 11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등에서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노동기준이 준수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ILO가 이러한 노동기준을 설정하고 다루는 권능을 가진 기관임을 인정하였다.

1997년 6월 제85차 총회시 ILO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은 가입시 ILO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이 약속한 바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1998년 6월 총회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근로자 기본권 선언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핵심적인 권리로 분류될 수 있는 4개 분야, 8개 협약을 선정하여<sup>9)</sup> 각

---

9) 8개 핵심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성실히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각 회원국은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동 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sup>10)</sup>, ILO 사무국은 매년 4개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1개 분야를 선정하여 세계 노동보고서(Global report)를 작성, 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sup>11)</sup>

### 고 용

ILO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12억명 이상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ILO로서는 인구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인 빈곤 탈피는 고용 창출 및 고용 확대를 통하여 이루

---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노동 협약, 제105호 강제 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제100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노동자의 동등 보수에 관한 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제138호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10)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2개 및 강제노동 관련 협약 2개를 비준하지 못했다.

11) 2000년 결사의 자유, 2001년 강제 노동, 2002년 아동노동, 2003년 차별 금지 관련 세계 보고서를 논의하게 되고, 2004년에는 결사의 자유부터 다시 논의하게 된다.

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난제인 빈곤 탈피와 각국의 고용 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ILO에서는 2001. 11. 1부터 3일까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 등 세계적인 전문가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 고용 포럼』(Global Employment Forum)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였다.<sup>12)</sup> ILO는 세계 고용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내용을 종합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ILO 이사회 고용사회정책위원회(Employment and Social Policy Committee)에서 세계 고용 포럼 후속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ILO 이사회 고용사회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될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수출 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s)의 고용 문제이다. 당초 작년 11월 이사회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논의되지 못하였고 금년 3월 이사회에서 논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특구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 자유지역 등의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노사간 첨예한 공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도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라는 의제가 금년 ILO 총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바, 노사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외 ILO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UN 및 세계은행(IBRD) 등과 공동으로 『청년 고용에 관한 고위급 정책 연합(High-level Policy Network on Youth Employment)』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업 훈련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보장

작년 ILO 총회에서는 협약 제155호 『작업 환경에 관한 협약』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직업병 목록』을 여건 변화에 따라 재분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별도의 의정서를 채택하는 문제였다. 동 논의 과정에서 직업병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확충코자 하는 노동

12) 자세한 내용은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geforum/index.htm> 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측의 주장과 그로 인한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사용자측의 우려가 대립되었으나 대다수의 정부 그룹들이 노동자 그룹의 의견을 지지함에 따라 노동자측의 의견대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금년 총회에서는 『산업 안전 보건 분야에서의 기준 관련 활동』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준 설정 작업 및 기술 지원 등 ILO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시도이다.

그외 사회보장 분야에는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담당하는 업무와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Safety Net 등의 업무가 있는데, 최근 ILO 논의 과정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없다.

##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 촉진은 ILO 양질의 고용의 중요한 한 축일뿐만 아니라 ILO의 기본정신인 노사정 3자주의(tripartism)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다. 따라서 ILO는 최근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 3자주의가 확충될 수 있도록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총회에서는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 3자주의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Social Dialogue and Tripartism)를 채택하였고, 작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전술한 결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

다.

이사회 논의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ILO 협약 비준을 독려하고<sup>13)</sup>, ILO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ILO가 회원국 및 노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4)</sup>

## ■ 세계화 관련 논의

2001. 11월 ILO 이사회에서는 세계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반』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종 논의 결과, 작업반과는 별도로 세계화가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인(賢人)그룹인 『세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부와 복지의 원천이라는 주장과 불평등과 사회적 격리(social exclusion) 심화

13) 관련 협약은 제144호 『국제 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 11월에 기비준하였다.

14) 자세한 내용은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alm/gb/docs/gb285/pdf/gb-7-1.pdf>를 참고하기 바란다.

의 원인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합의의 결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개방 경제의 이점을 유지하면서, 빈곤을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지구촌 경제하에서 경제·사회적 진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정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세계 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세계 위원회는 Tarja Halonen 핀란드 대통령 및 Benjamin Mkapa 탄자니아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그 외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저명 인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5)</sup> 또한 동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ILO와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ILO 사무총장 및 이사회 의장단이 세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sup>16)</sup>

15) 정부측에서는 Amato 이태리 前수상, Sanguinetti 우루과이 前대통령, Matvienko 러시아 사회·교육 분야 부총리 등이 있고, 노동자 측에서는 Sweeney 미국 노총 위원장, Vavi 남아공 노총 사무총장 등이며, 사용자측은 Nishimuro 일본 도시바 회장, Perigot 국제사용자협회 회장(프랑스) 등, 학계에서는 Stiglitz 교수(미국, 200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Nayyar 인도 델리대학 부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위원회는 작년 3. 25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2-3개월에 한번씩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 금년 8월 중순에 최종 회의를 거친 후, 금년 11월경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ILO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사무총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4년 제92차 ILO 총회에 제출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게 된다.

세계 위원회는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국별협의회, 지역별 협의회, 노사단체 및 NGO 등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sup>17)</sup> 이와는 별도로 세계 각국의 학자를 중심으로 세계화화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 9개를 선정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지식 연계(knowledge network)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8)</sup>

16)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2002. 6월, ILO 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02. 10. 12-15간 개최된 제3차 세계 위원회부터 당연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7) 세계 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의 세계화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도 세계화 관련 국별 협의회(National Dialogue)를 개최해 줄 것을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노동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금년 4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18) 현재 논의되고 있는 9개의 주제는 ① 세계화 관련 가치와 목표, ②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정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ILO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 관련 논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최단 기간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로 개도국의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국은 세계화의 수혜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ILO 세계 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의 세계화 관련 실태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별 협의회(National Dialogue) 개최를 요청해 왔고, 전술한 바와 같이 금년 4월 노동 연구원이 주관 기관이 되어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세계화 관련 한국 사례 검토 작업은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대내적으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경제 상황 및 세계화 실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

책, ③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지역 시장 및 정책, ④ 상품과 기술의 교역이 양질의 고용, 성장 및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⑤ 국제 노동이동, ⑥ 포괄적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지배구조(governance), ⑦ 세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⑧ 세계화가 남녀 평등에 미치는 영향 및 ⑨ 문화와 주체성이다.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LO로서는 금년 11월에 세계 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사무총장 보고서를 작성, 내년도 ILO 총회에 제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세계 위원회 보고서 및 사무총장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될지를 추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동 보고서 논의 후 채택되는 결론은 향후 각국의 세계화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로서는 주제네바 대표부 정의용 대사가 세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관련 논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고 있으나, 학계 등에서도 ILO 세계화 관련 논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 연계(Knowledge network)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외 경제 특구의 노동권 문제를 다루게 될 『수출 자유 지역(Export Processing Zones)의 고용 문제』,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게 될 『고용 관계(Employment Relations)』 등의 의제 논의에는 정부 관계자는 물론 노사단체와 학계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에서의 관련 대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2개와 『강제 노동』 관련 협약 2개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 대두시 기준이 되는 것이 상기 ILO 핵심협약이고, ILO 사무국이 기본권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비준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시기에 핵심협약들을 비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